



추백리 방역실시요령 개정고시

농림수산부는 그간 추백리 방역실시요령 개정고시(안)을 공표하고 여론수렴을 거쳤다. 이에 대해 본회는 추백리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역실시요령을 정부에 건의한 바 다음과 같이 추백리 방역실시 요령이 개정되어 지난 11월에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되었다.

- 다 음 -

농림수산부 고시 제95-9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백리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84-12호, '84. 3.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5. 11. .

농 립 수 산 부 장 관

추백리 방역실시요령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추백리의 발생 및 만연을 방지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대상) ① 부화목적의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 ②

축산기술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금류

제3조(검사실시 등) 추백리 검사는 종계 소유주 또는 종계관리자(이하 "소유주"라 한다.)가 120일령이상의 종계에 대하여 계군별로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실적 등) 추백리검사를 실시한 소유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추백리 검사실적을 관할 시장·구청장·군수 및 가축위생시험소장과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확인기관) 소유주의 추백리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해당 종계장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실시한다.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백리 검사실시 확인검사를 수의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검사방법) ① 추백리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소유주의 검사방법 : 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
2. 검사 확인기관검사방법 : 급속혈청응집반응법
- ② 제1항의 검사방법외에 다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정기준) 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 또는 급속혈청응집반응법에 의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 성 : 1분 이내에 응집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2. 의양성 : 1분을 초과하여 응집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3. 음 성 : 2분이 경과하여도 응집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8조(재검사 등) ① 제3조에 의한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종계에 대하여는 즉시 격리 사육한 후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검사 결과 다시 의양성으로 판단된 종계는 양성으로 한다.

② 소유주는 추백리 검사결과 양성율이 전체 종계 사육마리수의 1% 이상이 될 경우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양성종계의 조치) 소유자는 추백리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종계를 살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검사) ① 제5조의 검사확인기관은 관내 종계에 대하여 계군별로 년1회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검사시기는 제4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확인검사용 마리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계군별로 고르게 추출하여야 한다.

1. 5,000마리 이상의 종계장 : 사육마리수의 3%
2. 5,000마리 미만의 종계장 : 100마리 이상
3. 제1항의 확인검사결과와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양

성발생율이 1%이상인 종계장 : 사육마리수의 5% 제11조(확인검사결과 조치) ① 검사확인기관은 검사결과 양성발생율이 확인검사마리수의 1%이상인 종계장에 대하여 축산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부화업 및 종축업의 등록기관"과 축산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기관"에게 확인검사 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확인검사결과 양성율이 1% 이상인 종계장의 계군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종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최초 검사일로 부터 3월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율이 1%이상으로 확인된 종계장의 계군 전수를 도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확인기관은 제10조에 의한 확인검사 결과 과거 2년이상 추백리 양성발생이 없는 종계장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3조에 의한 소유주의 검사시 입회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6. 1. 1부터 시행한다.

양계업 외국인투자 전면개방

97. 1. 1부터 허용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37호로 지난 16일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83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은 당초 계획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계·양돈·낙농업은 '97.1.1부터, 기타 가금 사육업은 '96.1.1부터 시기가 도래되면 전면개방이 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제5조 관련)

업종분류	업 종 명	소관부처	허 용 기 준 ¹⁾	개 방 시 기 ²⁾	
01111	보통작물 생산업	농림수산부	— 화훼의 종묘 또는 육묘생산업에 한하여 내국인과 합작 투자 하는 경우에 허용	'97. 1. 1.	
0111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작물 생산업	농림수산부			
01121	채소작물 생산업	농림수산부			
01122	화훼작물 생산업	농림수산부			
01123	종묘생산업	농림수산부			
01124	멜론 및 기타 초본성 과실 생산업	농림수산부			
01132	음료 및 향신작물 생산업	농림수산부			
01140	시설작물 생산업	농림수산부			
01211	낙농업	농림수산부			
01212	육우사육업	농림수산부			
01221	양돈업	농림수산부			2000. 1. 1. 부분개방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01222	양계업	농림수산부			
01223	기타 가금 사육업	농림수산부			'97. 1. 1.
01300	복합농업	농림수산부			'96. 1. 1.
01423	원에 관련 서비스업	농림수산부	'97. 1. 1.		
			— 육묘를 제외하고는 허용	'97. 1. 1.	

주 1) 당해업종에 대한 현재의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을 뜻함. 따라서 허용기준이 없는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불허됨.

2) • 특정내용이 없이 연, 월, 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되면 전면개방됨.

•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되면 부분개방 개방폭이 확대됨.

축산단지(양돈·양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축산신문사(사장 윤봉중)는 지난 22일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축산단지(양돈·양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을 생산자 및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축산단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는데 양계분야에서는 손병원 소백단지 대표의 “양계단지 조성사례 발표”가 있었고 “양계단지 조성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김정주 전국대학교 교수가 발표에 나섰으며 양돈분야와 함께 자리를 마련한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정식 자연농장 대표와 이기동 전북양계조합장이 참석하여 현안문제를 토론하였다.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2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관련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



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가금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많은 발표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폐회식에 앞서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선출 및 학회상 수여식을 거행했다.

학회상 분야별 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학술상

이규호 교수(강원대학교)

• 공적상

봉사분야: 박근식 회장(한국축산기자재협회)

연구분야: 김기석 박사(수의과학연구소)

저술분야: 정선부 박사(제주시험장), 남기홍 교수(대구대학교) 공동저술

• 감사패

한국축산기자재협회, 미국대두협회, 미원마니커, 영육농산, 대연식품

신임회장에 정선부 박사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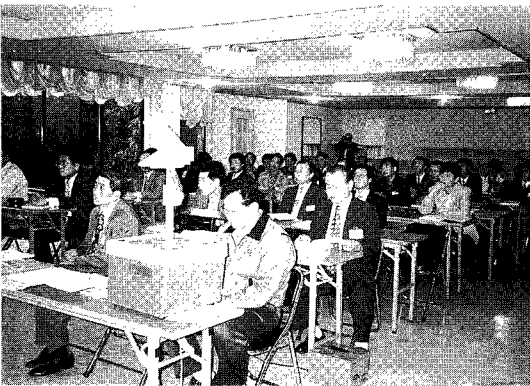
◁ 정선부 회장

동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정선부 박사(제주시험장장)를 선출하는 등 신규 임원진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지규만 교수(고려대학교), 김선중 교수(서울대학교), 이인형 부장(축산기술연구소), 박영인 회장(USFGC), 상무이사에는 이규호 교수(강원대학교)를 각각 선출했다.

한국 재래닭 보존 연구회

'95추계 세미나 개최



한국 재래닭 보존 연구회(회장 오봉국)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계룡산 동학사 내 동학산장에서 관련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5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회 한성욱 부회장의 "국내 재래닭의 사육실태", 오봉국 회장의 "일본 대만의 재래닭 사육현황",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사업계획 추진보고" 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선진지 견학의 순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한국육류수출협회 · 한국육가공협회

대일 수출 식육 품질개선 세미나 개최



한국육류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는 지난 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대일 식육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산 식육 품질개선 세미나"를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산 돈육 및 계육을 수입,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식육가공업계 및 테이블미트로 사용하는 실수요업계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생산, 소비 실정과 수입육의 요구수준을 파악하여 국내산 식육의 품질을 개선하여 수출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식조협회장(井島榮治)의 "일본 육계산업 전망과 향후 수급(수입)방향"이라는 주제로 일본 육계산업의 현황과 전망, 일본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과 대책, 국가별 계육 수입 현황과 품질 및 유통가격, 일본이 요구하는 부분육과 품질, 식조 수입 관련제도 등에 대한 발표를 했다.

(사) 한국축산기자재협회

(사) 한국축산기자재협회(회장 박근식)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농림수산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



산 동학산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재 국내 축산기자재 제조업체로 제한되어 있는 회원가입 자격을 전면 개방하여 수입업체 및 생산자단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며, 축종별 사양가단체들도 협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축산자동화에 따른 현안문제를 공동협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명칭을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로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승인이 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쟁력 제고 위해 축산기자재 업체에 자금 지원

농림수산부는 최근 사육규모의 전업화 축사 시설의 자동화에 따른 축산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3개 업체에 총 30억7천8백6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금년도 자금 지원을 신청한 16개 업체중 축산기자재 판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8%이며 축발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축산기자재 산업 활성화 위해 6백80억원 지원 계획

농림수산부는 지난 13일 축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오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축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 3백55억원, 융자 2백35억원, 자부담 90억원 총 6백80억원의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축산기자재 산업의 시장규모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함에 따라 구조개선 사업과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미국 옥수수 생산량 감소에 따라 향후 사료원료 수입 차질 예상

미국농무성이 지난 9일 발표한 세계농산물 수급 예측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1억8천7백16만톤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물량은 최근 5년간 평균생산량보다 10.8%, 지난해에 비해 27%가 적은 물량이다. 이로인해 향후 국제 옥수수가는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료업체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사료협회가 조사한 국제 옥수수 가격을 보면 지난 6일 현재 톤당 1백75불(C&F 기준)이며, 향후 1백80불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옥수수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